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8.22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담 당 자	서 승 리 사무관 (02-2100-2536)
	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장 경 운(02-3145-7120)		심은섭 핀테크감독팀장 (02-3145-7135)

제 목 :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,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-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 국회 정무위 의결

1 주요 경과

□ **P2P대출**은 기존과는 다른 **혁신적인 방식**을 통해 **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**을 개척하며 **빠르게 성장***하였음

* P2P 누적 대출액 : '16년말 0.6조원 → '19.6월말 6.2조원(잔액 1.8조원)

○ 그간 정부는 **'핀테크 성장'**과 **'투자자 보호'**라는 **정책목표 조화**를 위해 **유연한 규율체계**인 **가이드라인**('17.2.27 제정)으로 대응

* **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(1차 `18.2.27, 2차 `19.1.1)**하여 공시 강화, 상환금 분리 보관,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

○ 그러나 **법·규제 공백**에 따른 **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**와 함께, **허위 공시, 투자자금 유용·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**가 발생

□ 이에 **국회**에서는 P2P대출을 **핀테크 산업으로 건전**하게 육성하기 위해 **복수의 법안이 발의***되었고,

* 온라인대출중개업법('17.7월 민병두), 온라인대출거래업법('18.2월 김수민)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('18.4월 이진복), 대부업법('18.2월 박광온), 자본시장법('18.8월 박선숙)

○ **업계**도 **법제화**를 통한 **산업 발전**과 **이용자 보호 필요성** 지속 제기

□ 이에 **금융위**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**정부 대안**을 마련하였으며,

○ **금일(8.22일), 국회 정무위는**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**제정안을 의결**

2 주요 내용

※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

※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

①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**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**

* **(기존)** **10억원 이상**으로서 令으로 정하는 금액
  → **(수정)** **5억원 이상**으로서 **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** 令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

② P2P업체의 **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완화**

* **(기존)** 연계대출 금액의 **100분의 90 이상 범위**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
  → **(수정)** 연계대출 금액의 **100분의 80 이하 범위**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

가. 진입제도

□ **(등록의무) P2P업**을 하려는 자는 **금융위**에 **등록 의무**(§5)
→ **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**(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
○ **최소 자기자본**(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), 인적·물적 설비, 사업계획 타당성, 임원·대주주, 사회적 신용 등의 **등록 요건 규정**

○ **등록요건**(일부요건 완화) **유지 의무** → **위반시 등록취소** 사유

나. 영업행위 규제

□ **(P2P업체 정보공시) P2P업의 거래구조, P2P업체의 재무·경영 현황,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** 관한 사항 공시(§10)

□ **(금리·수수료)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**에서 이자(**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**) **수취**(§11)

□ **(금지행위) P2P업체 및 대주주** 등에 대한 **연계대출,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**, 투자와 대출의 **만기 불일치** 등 **금지**(§12)

○ **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**는 '**모집금액 80%이하**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)' 모집시 '**자기자본 내**'에서 허용(§12④)

다. P2P금융업 준수사항

□ **(투자자 보호)** P2P **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** 및 **투자자금 보호**를 위한 **준수사항** 규정

① **(정보제공)** P2P업체는 **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, 차입자 정보, 투자정보**(수익률, 채권추심 절차 등)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(§22)

② **(투자금·상환금 관리)** P2P업체 **횡령·도산**으로부터 **투자금 등을 보호**하기 위해 P2P업체에 **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** 부여(§26)

③ **(대출채권 도산절연)** P2P업체 도산시 **투자자 재산이 보호**될 수 있도록 **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**과 **절연**(§28)

□ **(투자·대출한도)** P2P금융의 **이용 한도 규제**

① **(대출한도) 동일 차입자**에 대해서는 **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% 범위** 이내로 **대출한도 제한**(§32①)

② **(투자한도)** 투자자 투자목적·재산상황, 투자상품 종류,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**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**(§32②)

□ **(원리금수취권 양도·양수)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**

○ **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**를 통해서만 **원리금수취권 거래*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

□ **(금융회사 등 투자참여) 금융회사 등**이 **연계대출 금액의 40%이내**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)**에서 연계투자 가능**

라. 기타

□ **(협회) 법정협회 설립근거**(§37) 및 **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**(§40)

□ **(검사·감독) 금융위·금감원**에게 **검사 및 감독 권한** 부여(§42·§43), **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** 부과(§45·§46) 등

3 향후 일정

□ **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**될 예정

○ 국회 본회의 의결 후 **차질없이 법 집행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**하겠음

※ 법 공포 후 일정

□ **(시행일) 법 공포 후 9개월 후**부터 시행

○ 다만, 협회 등 관련규정은 **공포 후 1년6개월** 내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** 시행

□ **(등록 경과조치 및 특례)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 부과**

○ 법 공포 당시 P2P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**공포 후 7개월 후**부터 **등록 신청 가능**

□ 이 과정에서 **산업 발전**과 **이용자 보호**를 위해 **업계, 민간전문가 등**과의 **소통을 강화**하는 등 **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**하겠음

※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

□ **등록 요건**

① **최소 자기자본 요건**(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)
② 자기자본 등의 **등록유지 요건**

□ **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관련**

① **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**(100분의 80이하 모집시,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)
② 자기자금 투자시 **이용자 보호** 등을 위한 **P2P업체 의무사항**

□ **P2P업체 이용한도**

① P2P업체 **대출한도**(대출잔액의 10% 이내)
②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**투자한도**

□ **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 한도**(모집금액 40% 이내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